

의안번호	2218915
의 퇴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6.9.11.
추계번호	26D2569

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단양 곡계굴사건 사망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5억 6,000만원, 2029년 74억 7,000만원으로 2년간 총 150억 3,000만원(연평균 75억 1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합계	연평균
보상금 지급 (안 제12조)	7,560	7,470	15,030	7,515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현재 결정된 희생자 수를 대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)	-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둠 -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-위원회는 보상금, 의료지원금,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2	안 제5조(자문기구의 설치 등)	-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6조(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 설치 등)	-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함)를 둠 -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	의무규정

4	안 제8조(위원회의 활동기간)	-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,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·의결을 완료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-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의·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9조(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)	-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, 보상금·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,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, 실종선고의 청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, 증인,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1조(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 작성)	-위원회는 제8조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위원회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2조(보상금)	-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 1)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: 9천만원 2)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: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	의무규정
8	안 제13조(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)	-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26조(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)	-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34조(심리상담 등 지원)	-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11	안 제35조(추모사업 등)	-국가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추모 행사의 거행, 위령탑 건립 등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12	안 제36조(추모재단 설립)	-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을 추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재단을 설립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단양 곡계굴 사건 ¹⁾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)	×	○ 제정안은 위원회·분과위원회·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, 자문기구·보고서작성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○ 다만, 제정안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제정안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·실무위원회·분과위원회·보고서작성기획단의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<참고자료> 과거사관련 위원회 운영 및 예산 현황
2	안 제5조(자문기구의 설치 등)		
3	안 제6조(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)		
4	안 제8조(위원회의 활동기간)		
5	안 제9조(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)		
6	안 제11조(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 보고서 작성)		
7	안 제12조(보상금)	○	—
8	안 제13조(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)	×	○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인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는 167명으로 전원 사망자이며, 후유장애 희생자는 현재까지는 없음 ○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통해 희생자가 추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추정하기 어렵고, 제정안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
9	안 제26조(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)	×	○ 제정안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 시점에서 법인에 의하여 실시될 추모사업과 해당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

10	안 제34조(심리상담 등 지원)	×	○ 제정안은 심리 상담,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지원 내용, 지원에 소요될 예산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11	안 제35조(추모사업 등)	×	○ 추모사업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추모사업 계획이 구체화 된 이후에 추계가 가능할 것이므로,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12	안 제36조(추모재단 설립)	×	○ 국가가 추모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재단의 추진할 사업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원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추가재정소요는 지급 대상을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희생자에 한정하여 추계함
 - 제정안에 따라 보상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희생자가 추가 결정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희생자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희생자로 결정된 인원내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,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는 신원 확인된 사망자 167명이며, 행방불명 희생자 및 후유장애 희생자는 현재까지는 없음
- 안 제22조는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,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하여 「국가배상법」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, 향후 진행될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동 규정에 따른 차감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

1) 단양 곡계굴사건은 미군 폭격에 의한 단양 곡계굴 및 인근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, 2008년 5월 20일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하여 신원 확인된 사망자 수 167명으로 진실규명 결정되었음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8년에 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제정안 시행 이후 2년에 걸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 희생자는 사망자 167명이며, 제정안에 따라 1명당 9,000만원²⁾을 지급함
 - 2028년 84명, 2029년 83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(보상금) 제정안에 따라 단양 곡계굴사건 사망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5억 6,000만원, 2029년 74억 7,000만원으로 2년간 총 150억 3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보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구분	2028년	2029년	합계
보상금 신청 건(a, 명)	84	83	167
보상금 지급액(b, 백만원)	90	90	90
추가재정소요(a×b, 백만원)	7,560	7,470	15,0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현재 결정된 희생자 수를 대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2) 제정안 제12조(보상금)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: 9천만원
2.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: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

<참고자료> 과거사관련 위원회 운영 및 예산 현황

구분	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	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위원회	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
위원회 구성일	2000.8.28	2004.6.6.	2022.1.21
존속기한 및 근거	별도 규정 없음	별도 규정 없음	2027.10.4. (여순사건법 제7조)
위원장	국무총리	국무총리	국무총리
위원 수 (위원장 포함)	25명	16명	15명
예산 (2026년도)	○ 회의운영예산: 83백만원	○ 회의운영예산: 없음	○ 회의운영예산: 304백만원
	○ 사무국예산: 19백만원	○ 사무국예산: 없음	○ 사무국예산: 1,418백만원
	○ 사업예산*: 15,830백만원 - 제주4·3실무위원회 운영 : 77백만원 - 희생자 추념식 : 1,196백만원 - 4·3사건법 후속조치 : 3,202백만원 -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: 1,135백만원 - 제주4·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: 5,608백만원 - 제주4·3평화재단 출연금 : 3,800백만원 등	○ 사업예산: 1,207백만원 -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(민간위탁): 732백만원 -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(시설보수): 75백만원 -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사업 지원: 327백만원 -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운영경비 보조: 73백만원	○ 사업예산: 2,771백만원 - 실무위원회 운영 : 141백만원 - 위령사업 지원 : 360백만원 - 사실조사단 구성·운영 : 990백만원 -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 : 100백만원

* 제주4·3위원회 사업예산은 보상금 지급 예산은 제외한 금액임

자료: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(2026.6.30. 기준),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(Ⅱ-1)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